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6-47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지도우미 임무 추가로 인해 대민접촉이 활발해진 통장에게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플루엔자 통장 무료 예방접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안 제5조의2 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901-6085, FAX: 901-6108, E-mail: stern1004@gangbu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